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58

발의연월일: 2021. 8. 13.

발 의 자:이종배·김선교·송석준

이종성・성일종・金炳旭

김승수 · 추경호 · 김정재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할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보호조치"라 함)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국방·치안·금융·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해당 분석·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

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보호조치를 권고가 아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력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함.

이에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 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u>2천만원</u>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u>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u>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
	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
	<u>지 아니한 자</u>
<u>②</u> ~ <u>⑤</u> (생 략)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